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041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교육 이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300만원으로 정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 보험 또는 신탁 가입 의무의 이행을 유도하고, 단순 부주의 등으로 가입을 지체한 자와 고의로 장기간 가입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에는 미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7. 29.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4호”를 “법 제4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업무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외국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를 “외국인근로자”로 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권한 또는 업무를”로 한다.
별표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

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사목(중전의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사용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의2	300
--	-----------------	-----

사.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6호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		80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초과 360일 이하인 경우		160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60일 초과 540일 이하인 경우		240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540일을 초과하는 경우		3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별표 제2호바목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u>법 제4조제2항 제4호</u>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u>법 제4조제2항 제5호</u>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u>권한의 위임·위탁</u>) ① (생략)	제31조(<u>권한 등의 위임·위탁</u>)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u>권한</u> 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 <u>업무를</u> -----.
<u><신 설></u>	1. <u>법 제11조의2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u>
1. (생략)	5. (현행 제1호와 같음)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u>권한</u> 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수행을 위한 인적·물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③ ----- <u>업무를</u> ----- ----- ----- ----- -----.
1. 법 제21조제2호에 따른 <u>외국</u>	1. ----- <u>외국</u>

<u>인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u> 한 교육사업 2. ~ 6. (생 략) ④ (생 략)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3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u>권한</u>을 위임 ·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직 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한국산업 인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 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13. (생 략)	<u>인근로자</u>----- ----- 2.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u>권한 또는 업</u> <u>무를</u> ----- ----- -----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연 락 처	(044) 202 - 7149